

감 사 보 고 서
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
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의 2018. 3. 1부터 2019. 2. 28로
종결되는 2018학년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결산서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
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확인 및
검토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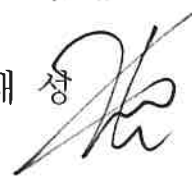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 2019. 2. 28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법인과 학교의
결산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2019년 4월 10일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

감 사 오엽록 

감 사 정경진 

피감사자(임회인) 법인 경영지원그룹리더 최재성 

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귀하